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78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4.
3. 회 부 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과 조치결과 사유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지체없이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신고자에게 그러한 조치의 개시 및 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14條의2(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중지·警告등) <u>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은 職務遂行중에 選舉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選舉의 公正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不履行하는 때에는 管轄搜查機關에 搜查依頼 또는 告發할 수 있다.</u> <신설>	第14條의2(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중지·警告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린 행위를 말한다)에 따라 제1항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지체 없이 그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신 설>	<u>결과(조치 결과에 이른 경과 및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한다)를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u> <u>제21조(벌칙)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를 위반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의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지 및 신고나 자수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조치가 개시될 경우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조치 개시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신고자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문서나 전화, 이메일로 통보하고 있으나,²⁾ 신고자가 조치 개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신고자에게 조치 개시 및 결과 통보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의 알 권리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선거법위반행위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유선(1390), 방문신고,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실명인증 필요)으로 가능하고 유선이나 방문을 통한 신고는 실명이나 익명으로 가능하나 처리 결과 통보는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 2)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 - 제4절 선거범죄의 조사 및 조치 - 라. 처리결과 통지 및 공개 - 1) 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의 조치결과는 신고·제보자, 피조치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함. 다만, 증거인멸, 담합 등으로 위법행위를 은폐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보할 수 있음.(선거범죄조사사무편람 98p, 2023.12.)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익명신고 및 실명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조치 개시 및 처리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고자가 실명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조치 개시나 결과 미통보 시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신고된 사건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하거나 사건을 종결할 시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지 미통보에 대하여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신고된 사건에 대해 조사기관에 이첩할 시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첩 미통보에 대하여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단순히 조사 개시 사실이나 조치 결과의 취지를 통보하는 것을 넘어 조치 결과에 이르는 경과 및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조사 관련 공정한 직

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수사나 재판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자가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우리 형사법체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단순 의무 불이행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 입법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체계상 정당성 및 균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

[단위: 건, 2024. 7. 19. 기준]

선거별	조치별	계	고 발	수사의뢰	경고 등
국선 제21대 (‘20.4.15.)	자체인지 (언론보도 포함)	394	103	13	278
	신고제보 (이의제기 포함)	518	154	30	334
	자 수	22	1	1	20
	합 계	934	258	44	632
대선 제20대 (‘22.3.9.)	자체인지 (언론보도 포함)	205	63	41	101
	신고제보 (이의제기 포함)	277	88	79	110
	자 수	4	0	0	4
	합 계	486	151	120	215
지선 제8회 (‘22.6.1.)	자체인지 (언론보도 포함)	1,114	176	22	916
	신고제보 (이의제기 포함)	792	200	73	519
	자 수	178	3	1	174
	합 계	2,084	379	96	1,609
국선 제22대 (‘24.4.10.) ※ 진행중	자체인지 (언론보도 포함)	880	189	20	671
	신고제보 (이의제기 포함)	568	141	44	383
	자 수	39	2	2	35
	합 계	1,487	332	66	1,08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